

" 서울, 새로운 탄생 "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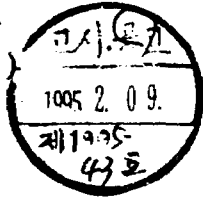
우편 120-030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-1 / 전화(02)3907-357 / 전송 362-6928

문서번호 생산 58442-126

시행일자 '95. 2.

수신 (제1안) 내부결재

참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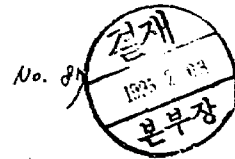
취급		본 부 장	
보 존		김치우	
차 장	36		
부 장	추	법무담당관	총무부장
과 장	리	업무부장	시설부장
기 안	송 만	기획예산과장	경리과장

제목 전면 책임감리 용역 시행 및 공고

1.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공릉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별첨 전면책임감리 용역발주 계획서(안)에 의거 아래와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용역명 : 공릉배수지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
- 나. 예산과목 : 자본적지출, 가동설비자산, 구축물, 감리비
- 다. 용역시행 방법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) 규정에 의거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2-3개의 적격업체 선정 (가격경쟁으로 최종업체 선정)
- 라. 관련법규 :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3조
- 마. 공고 방법 : 신문 공고
- 바. 공고 내용 : 별첨

- 첨부 : 1. 신문 공고(안) 1부
2. 전면책임 감리용역 발주 계획서(안) 1부



2-112

///

(제 2 안)

- 126

수신 : 서울특별시청

참조 : 공보관

제목 : 공동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에 따른 공고

1.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공동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건설기술
관리법 제27조,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공고의뢰 하오
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공 고 안 : 별 첨

나. 신문게재 : 2개 일간신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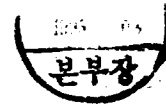
다. 게재일자 : '95. 2.

라. 공고비용 지출방법 : 신문게재후 청구서에 의해 지불

첨부 : 공고안 1부.

끝.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



113

112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호

신청	1995. 2. 21	승인	1995. 2. 21
발령		발령	

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수행참여 안내공고

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을,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안내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.

1995년 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

- 가. 용역명 : 공릉배수지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
- 나. 용역사업시행기관명 :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
- 다.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: 배수지(용량17만톤)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
- 라. 총사업비 및 당해년도 예산규모 : 총 600,000천원, 당해년도 300,000천원
- 마. 입찰예정시기 : 1995년 3월 초
- 바. 기타 입찰에 필요한사항 : 제2항 내용참조

2.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참여 안내

- 가. 참가자격 :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된 업체
- 나. 용역수행신청안내서 교부 및 접수
 - (1). 신청안내서 교부 : 1995년 2월 11 일 - 2월 22 일 (17:00시)
 - (2). 신청서 접수 : 1995년 2월 23 일 - 2월 24 일 (17:00시)
 - (3). 신청안내서 교부 및 접수장소 :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부
- 다. 기타사항
 - (1). 세부사항은 별도 교부하는 신청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.
 - (2).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후 선정업체에 한해 입찰일시 개별통지.
 - (3). 신청안내서 및 과업지시서는 업체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조지한 소속직원이 직접 수령 및 접수 (위임장·본인인장 지참).
 - (4)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부(390-7352-4)로 문의.